

학교법인 흥복학원 정관

1977년 6월 20일

관리 10421 - 894

定 款

학교법인 흥복학원

제 1 차 개정	1979. 10. 22.	관리	1024.3 - 1466
제 2 차 개정	1979. 11. 21.	교행	1042.3 - 813
제 3 차 개정	1979. 12. 20.	관리	1042.3 - 1790
제 4 차 개정	1981. 5. 4.	관리	1042.3 - 568
제 5 차 개정	1981. 8. 22.	관리	1042.3 - 1013
제 6 차 개정	1983. 12. 1.	관리	1042.3 - 1521
제 7 차 개정	1984. 12. 24.	교행	1042.3 - 1120
제 8 차 개정	1985. 1. 24.	관리	25422 - 96
제 9 차 개정	1985. 12. 28.	교행	25422 - 1111
제 10 차 개정	1986. 1. 10.	관리	25422 - 41
제 11 차 개정	1986. 10. 31.	관리	25422 - 1326
제 12 차 개정	1990. 11. 20.	관리	25422 - 735
제 13 차 개정	1992. 10. 28.	행정	25422 - 682
제 14 차 개정	1993. 6. 22.	행정	81423 - 568
제 15 차 개정	1993. 12. 24.	행정	81422 - 1067
제 16 차 개정	1995. 5. 30.	행정	81414 - 365(95. 5. 12)
제 17 차 개정	1995. 10. 16.	행정	81422 - 1018
제 18 차 개정	1995. 12. 12.	행정	81422 - 1242
제 19 차 개정	1996. 8. 6.	행정	81422 - 907
제 20 차 개정	1998. 4. 9.	행정	81422 - 385
제 21 차 개정	2000. 7. 21.	기예	81422 - 572
제 22 차 개정	2001. 3. 27.	기예	81422 - 231
제 23 차 개정	2001. 10. 10.	기예	81422 - 691
제 24 차 개정	2002. 5. 28.	기예	81422 - 369
제 25 차 개정	2005. 8. 22.	기획예산과	-4854
제 26 차 개정	2006. 2. 2.	기획예산과	-529
제 27 차 개정	2006. 11. 09.	기획예산과	-7813
제 28 차 개정	2007. 01. 19.	기획예산과	-425
제 29 차 개정	2007. 05. 03.	교육행정지원과	-2631

제 30 차 개정	2007. 12. 17.	교육행정지원과-9865
제 31 차 개정	2008. 05. 19.	교육행정지원과-3864
제 32 차 개정	2013. 11. 27.	학교법인홍복학원-13
제 33 차 개정	2014. 02. 17.	학교법인홍복학원-70
제 34 차 개정	2016. 06. 21.	학교법인홍복학원-276
제 35 차 개정	2016. 08. 29.	학교법인홍복학원-394
제 36 차 개정	2020. 09. 01.	학교법인홍복학원-502
제 37 차 개정	2021. 02. 22.	학교법인홍복학원-146
제 38 차 개정	2021. 12. 29.	학교법인홍복학원-83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홍복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 학교) 이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서진여자고등학교
2. (삭제)
3. 대광여자고등학교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42번길 20(주월동)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①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에 대하여 교육감이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산의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여하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신설 2021.12.10.>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장이 집행한다. <개정 2021.12.10.> <2022.3.1. 시행>

④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신설 2021.12.10.>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 절 예산·결산 자문위원회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6 (삭제)

제12조의7(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한다. <개정 2021.12.10.>

②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년간 공개한다. <개정 2021.12.10.>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이사 8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감사 2인

제13조2(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

제13조3(개방이사의 자격) ①법인의 개방이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10.>

1.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개정 2021.12.10.>

2.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발전에 이바지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 <신설 2021.12.10.>

②필요시 관할청에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다. <신설 2021.12.10.>

③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신설 2021.12.10.>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 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1.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2.감사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선·해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해당하는 사항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②임기 만료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필요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이사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의2(개방이사의 선임) ①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간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교육감에 이사 후보자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의3(추천위원회) ①추천위원회는 서진여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3인

가. 서진여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 2인

나. 대광여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 1인

2. 법원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③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에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⑥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5조의 2(개방이사 선임)을 준용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2.사립학교 교원으로 제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3.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자 <개정 2021.12.10.>
<2021.12.25. 시행>

제17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의2(상임이사의 선출과 임기 등) 이사회에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결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이사회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에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1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1조의2(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①교직원 행동강령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②학교법인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개방감사로 한다.

제 2 절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에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에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제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에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이사회에의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5조(이사회에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에의 개회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0.> <2022.3.25. 시행>

제25조의2(이사회 회의록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절 학교운영위원회

제26조의2(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의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치경영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26조의3(운영위원회의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호는 자문한다. <개정 2021.12.10.>

1.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③법 제32조제1항제13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은 위원 1인의 소개를 얻어 제안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규정”이라 한

다)으로 정한다.

제26조의4(위원의 선출 등) ①당해 학교의 장은 당면직 교원위원이 된다. 학교의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학년별·교과별·성별·연령별 교원수를 고려하여 2배수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며, 이 경우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등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전까지 선출한다.

⑤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되, 그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학부모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한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의 추천을 관리하기 위한 추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⑦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면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26조의5(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26조의6(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의 자격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26조의7(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참석시 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회에는 일반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⑤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의8(위원의 퇴직)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면 퇴직된다.

1.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교원위원은 전보 또는 퇴직된 때

3.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②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26조의9(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6조의10(서류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신청권)

①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전의 자문 또는 심의와 직접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의11(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6조의12(안전의 제출·발의) 위원회에서 자문 또는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

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26조의13(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6조의14(회의의 공개)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 가정통신문, 학교계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의15(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16(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전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의17(간사) ①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당해 학교의 행정실장이 되며,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6조의18 (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경비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지침으로 정한다.

제26조의19(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6조의20(이사장의 개선요구) ①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학교의 건학이념과 목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교의 장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의21(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절 사학윤리위원회

제26조의22(사학윤리강령 준수 등) ①이 법인은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을 준수한다.

②이 법인 및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제 4 장 수익사업

제27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1.정기예금 이자 수입
- 2.기본재산 임대 수입
- 3.기타 부대사업 수입

제28조내지30조(삭제)

제 5 장 해 산

제3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립학교법」 제35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3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용

제34조(임용)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 이내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단,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21.12.10.> <2022.2.11. 시행>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0항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개전형에 의한다.

⑤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⑥기타 교직원 임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교원, 사무직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의2(기간제교원) ①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권한을 당해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2.10.>

- 1.교원이 제35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 2.교원이 파견, 연수, 징직, 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 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 3.파면, 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심을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 4.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원이 필요한 때.
- ②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 ③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의3(전형결과 공개) ①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34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제 2 관 신분보장

제35조(휴직의 사유) ①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의2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사·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9조의3에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7의2. 만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제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 ② 임용권자는 제1항 제7호 및 제7의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한다.

제36조(휴직의 기간) ①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때 까지로 한다.
3.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5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 6의2. 제35조제1항제7의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3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35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제직기간중 총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35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외국근무, 해외유학·연수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35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11. 제35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제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 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은 복직하려면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을 준용하여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5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38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5조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 <삭제>

제39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보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5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80퍼센트
2.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 ⑤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 시킬 수 있다.

제39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제43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교육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40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교육공무원인 교원)의 보수 및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의2(교원의 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따른다. <개정 2021.12.10.>

제40조의3(특별승진)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제41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41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와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급감축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심위원회에 제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의2(명예퇴직수당) ① 교원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재직 기간에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와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임용권자는 지급대상자의 범위, 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수당지급일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임용권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3. 임용권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의한 명예퇴직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의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1조의4(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1조의5(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교장 제외)의 임용 등 중요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21.12.10.>
2. 교원의 보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10.>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신규교사 임용에 따른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10.>
5. 교감 또는 교사의 자격연수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10.>
6.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개정 2021.12.10.>

제41조의6(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구성한다. <개정 2021.12.10.>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1조의7(인사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인사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을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의8(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의 1/3 이상이 요청할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1.12.10.>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의9(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개정 2021.12.10.>

제41조의10(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12.10.>

제41조의11(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42조 (삭제)

제43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에 당해 학교별로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12.10.>

1.해당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마.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외부위원에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1.12.10.> <2022.3.25.시행>

제43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외부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사립학교법 제66조의5에 다른 비밀누설금지직무를 위반한 경우

제44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6조의2(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6조의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7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8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2.3.25.시행>

③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제심의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0.> . <2022.2.11.시행>

제48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①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재심의를 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관할청과 임용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가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징계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하여는 제46조·제47조 및 제48조제1항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신설 2021.12.10.> <2022.3.25.시행>

제49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제51조(운영세칙)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삭제)

제52조내지 제65조 (삭제)

제 4 절 사무직원

제66조(자격)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1.12.10.> <2022.2.11.시행>

②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제67조(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단,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사무직원중 당해계급에서 승진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사무직원(이하 “대우사무직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사무직원 선발 및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의2(근속승진제) ①임용권자는 학교소속 일반직8급이하 및 기능직 8급이하 사무직원 중 근속승진 소요연수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근속승진제에 의하여 각각 상위 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근속승진으로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정관의 정원기준을 초과한 별도의 현원으로 관리한다.

제67조의3(사무직원 명예퇴직) ①사무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법 정년을 기준하여 그 이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 명예

퇴직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와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③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임용권자는 지급대상자의 범위, 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기타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수당지급일 2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임용권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의한 명예퇴직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7조의4(사무직원 특별승진) ①정관 제67조의3에 의거 명예퇴직을 하는 자가 근무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8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의 정년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일반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5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71조의2(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서진여자고등학교, 대광여자고등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의3 <삭제>

제71조의4 <삭제>

제71조의5 <삭제>

제71조의6 <삭제>

제71조의7 <삭제>

제71조의8 <삭제>

제71조의9 <삭제>

제71조의10 <삭제>

제71조의11 <삭제>

제71조의12 <삭제>

제71조의13 <삭제>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72조(법인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5~6급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고등학교

제73조(교장 등) ①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4조(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5~6급으로 보하며,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5조내지 제81조(삭제)

제 8 절 정 원

제82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 8 장 보 칙

제83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21.12.10.>

제84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85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구기홍	1932. 7.12	자 1977. 6.20 지 1981. 6.19	광주광역시 동구 남동 86의 4번지
이 사	서혜영	1938. 7.15	자 1977. 6.20 지 1981. 6.19	광주광역시 동구 남동 86의 4번지
이 사	김부한	1933. 2.15	자 1977. 6.20 지 1981. 6.19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634의 4번지
이 사	한규택	1933. 2.4	자 1977. 6.20 지 1979. 6.19	전남 고흥군 도양읍 관리 1456번지
이 사	박한수	1938. 5.15	자 1977. 6.20 지 1979. 6.19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541의 36번지
이 사	홍순옥	1929. 3. 6	자 1977. 6.20 지 1979. 6.19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668의 3번지
감 사	이영주	1945. 3. 8	자 1977. 6.20 지 1978. 6.19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39의 12번지
감 사	구제남	1932. 3.23	자 1977. 6.20 지 1979. 6.19	광주광역시 동구 황금동 54번지

부 칙 [관리 제 1042.1 - 894(1977. 6 20)]
이 정관은 197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1042.3 - 1466(1979. 10. 22)]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79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별표 1 및 별표 2의 각 직급에 임용된 사무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③(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사무직원중 제41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후 6월 이내에 당원 퇴직된다.
- ④(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사무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사무직원의 신규 임용을 하지 못한다.

부 칙 [교행 1042.3 - 813(1979. 11. 21)]
이 정관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1042.3 - 1790(1979. 12. 20)]
이 정관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1042.3 - 568(1981. 5. 4)]
이 정관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관리 1042.3 - 1013(1981. 8. 22)]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교명 : 광주옥천여자상업고등학교는 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 ③(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관리 1042.3 - 1521(1983. 12. 1)]
이 정관은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행 1042.3 - 1120(1984. 12. 24)]
이 정관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25422 - 96(1985. 1. 24)]
이 정관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행 25422 - 1111(1985. 12. 28)]
이 정관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25422-41(1986. 1. 10)]
이 정관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25422 - 1326(1986. 10. 31)]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관리25422 - 735(1990. 11. 20)]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④(학교의 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학교의 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부부터 기산한다.

부 칙 [행정 25422 - 682(1992. 10. 28)]
이 정관은 199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 81423 - 568(1993. 6. 22)]
이 정관은 199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 81422 - 1067(1993. 12. 24)]
이 정관은 199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5. 30 행정 81414 - 365(1995. 5. 12)]
이 정관은 199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되 “직할시”를 “광역시”로 변경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서구”를 “남구”로의 변경은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부 칙 [행정 81422 - 1018(1995. 10. 16)]
이 정관은 199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 81422 - 1242(1995. 12. 12)]
이 정관은 199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 18422 - 907(1996. 8. 6)]
이 정관은 1996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 81422 - 385(1998. 4. 9)]
이 정관은 1998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에 81422 - 572(2000. 7. 21)]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규정)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제정되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은 당해 학교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③(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 부터 개시하며,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한다.

부 칙 [기에81422 - 231(2001. 3. 27)]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에81422 - 691(2001. 10. 10)]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학교명칭(서진여자고등학교)은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에81422-369(2002. 5. 28)]
이 정관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예산과-4854(2005. 8. 22)]

이 정관은 2005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예산과-529(2006. 2. 2)]

이 정관은 200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예산과-7813(2006. 11. 09)]

이 정관은 2006년 1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15조 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③(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기획예산과-425(2007. 1. 19)]

이 정관은 200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행정지원과-2631(2007. 05. 03.)]

이 정관은 2007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행정지원과-9865(2007. 12. 17.)]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행정지원과-3864(2008. 05. 19.)]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교법인홍북학원-13(2014.01.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11월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교법인홍북학원-70(2014.02.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2월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교법인홍북학원-276(2016.6.2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정관 제26조의5(위원의 임기)는 시행일 현재 운영위원부터 적용한다.

③(교원 의원면직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정관 제39조(직위해제 및 해임) 제2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④(교원징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정관 제43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제3항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교법인홍북학원-394(2016.8.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교법인홍북학원-502(2020.9.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교법인홍북학원-146(2021.2.22.)]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교법인홍북학원-830(2021.12.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개방이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규정 시행일 전에 선임된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방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임원선임의 제한) 시행일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④(임용),(징계의결),(자격) 시행일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⑤(회계의구분),(운영위원회의 기능)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이사회 의 소집),(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징계의결의 재심의) 시행일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 인 일 반 직 원 정 원

직 종	직 군	직 렬	직 급	정 원
일반직	행 정	교육행정	4급	1명
			8급	1명
	기 술	운 전	9급	1명
계				3명

(별표 2)

학 교 일 반 직 원 정 원

1. 서진여자고등학교

직 종	직 군	직 급	정 원
일반직	행 정	5급	-
		6급	1명
		7급	1명
	관리운영, 기술	7급~9급	3명
계			5명

2. (삭제)

3. 대광여자고등학교

직 종	직 군	직 급	정 원
일반직	행 정	5급	1명
		6급~7급	1명
	관리운영, 기술	7급~9급	3명
계			5명